



교육봉사활동 I·II

교과목 이수안내



2019학년도 1학기
천안캠퍼스 교직원지원센터

1. 교육봉사활동의 정의

교육실습 중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초·중·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

(※무급봉사를 원칙으로 하며,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함)

2. 교육봉사활동 이수 기준

가. 인정학점: 1학점

나. 이수학기

- 교육봉사활동 I : 2학년 2학기
- 교육봉사활동 II : 3학년 1학기

(이수학기는 권장사항이며 4학년 1학기에 학교현장실습과 중복으로 진행할 경우 이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의 바람)

다. 1학점 당 3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 활동을 기준으로 함(총 60시간 이상).



3. 교육봉사활동 기관 범위

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평생교육법」 등에 의하여
설립된 학교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

가. 동행프로젝트를 통한 교육봉사활동 (<https://www.donghaeng.seoul.kr/>)

나. 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서의 교육봉사활동

- 학교현장실습 가능학교로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또는 인정하는 기관
- 유치원 불가

다.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인가증을 보유한 단체로 아동복지센터, 청소년수련원, 자활센터, 아동복지센터 등이 해당 → **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함**

“학생이 직접 교육봉사활동 기관 섭외”

4. 교육봉사활동 내용

가. 교과목 학습지도

나. 특기 적성지도

다. 학습부진아 지도(방과후 학습 등)

※ 단순히 봉사활동이 아닌 교육적인 활동이 수반되는 봉사만 인정 됨

(자율학습 감독, 등·하교 교통지도, 금연지도 캠페인, 학교시설 청소, 도서관 책정리 등 교육과 무관한 내용은 인정되지 않음)



5. 제출서류 및 진행일정

가. 제출서류

- 교육봉사 계획서
- 교육봉사 확인서: 30시간 이상의 이수확인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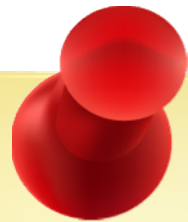
나. 제출처 : 교직원지원센터(본관 104호 교직원지원센터 사무실)

<2019-1 진행일정>

내용	일정	비고
교육봉사활동 <u>계획서</u> 제출	~2019.03.22.(금)	- 별첨 양식 사용 - 봉사기관에서 날인 받은 후 교직원지원센터에 제출
교육봉사활동 <u>확인서</u> 제출	~2019.06.07.(금)	- <u>시간 및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</u> 별첨 양식에 확인을 받은 후 교직원지원센터에 제출(봉사기관의 양식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)

※교육봉사활동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교직원지원센터(본관 104호) ☎041-550-5102로 문의 바랍니다.





교직원지원센터

연락처: 041-550-5102

위치: 본관 104호 교직원지원센터